

##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6. 15

(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개정사유

- 군청민원실에 부인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와 읍.면에 인증기를 사용하여 제증명발급 등 민원을 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수입증지 계기의 관리책임자 지정 등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에 따른 화순군수입증지조례를 수정보완 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4조의2,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함.
-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
  -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실과소장, 읍면장으로 하며
  - 발행기관명, 발매장소, 계기의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동 개정조례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·읍면 민원실에서 발급처리하는 제·증명 민원을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
- 정부의 “작은정부” 구현시책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,
- 다만,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와 인증기등의 계기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순군공인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,
- 동 조례의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제②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계기 사용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

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실, 과, 소의 장 및 읍, 면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의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수입증지요금계기의사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영시 다음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</p> <p>1 ~ 4 (생략)</p> <p>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계기상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의2(수입증지요금계기의사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계기 사용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</p> <p>1 ~ 4 (현행과같음)</p> <p>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실,과,소의 장 및 읍,면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의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